#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 목 차

제1장 총칙2
제1조 목적2
제2조 다른 법령 및 제규정과의 관계2
제3조 적용대상2
제4조 용어의 정의2
제5조 계약방법
제6조 기간 및 시기3
제2장 직무청렴 의무3
제7조 직무청렴 의무와 책임3
제8조 금품수수 등의 제한3
제9조 이권 개입 등 금지4
제10조 직무관련 정보의 유출금지 및 거래 등의 제한4
제11조 알선·청탁 등 금지
제12조 청렴의무 준수기간4
제3장 청렴의무 위반 심의4
제13조 위반 심의·의결4
제14조 심의·의결 절차 및 방법 ······5
제15조 재심청구5
제4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5
제16조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5
제17조 성과급의 회수5
제18조 손해배상 청구5
제5장 보칙6
제19조 경영공시6
제20조 관련부서
부칙6

###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2006.12.13 제정 (규정 제781호) 2007.12.28 개정 (규정 제817호) 2012. 3. 5 개정 (규정 제953호) 2017.12.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규정 제1160호) 2021.10. 7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규정 제1349호)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7.12.4, 2021.10.7>
- 제2조(다른 법령 및 제규정과의 관계) 임원직무청렴계약(이하 "직무청렴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8., 2021.10.7>
-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5, 2021.10.7〉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7.〉 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
  - 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1.10.7.>
  - 나. 검사, 감독, 진단,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승인, 시험, 지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2.3.5>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12.3.5>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12.3.5, 개정 2021.10.7.>

-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 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2.3.5〉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계약방법) ①직무청렴계약은 기관장 경영계약 등 기존의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체결한다. <개정 2007.12.28>
  - ②직무청렴계약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계약 당사자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개정 2012.3.5, 2021.10.7>
  - 1. 이사장의 계약당사자는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 2. 상임이사의 계약당사자는 이사장이 된다.
- 제6조(기간 및 시기) ①직무청렴계약의 계약기간은 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5>
  - ②직무청렴계약은 대상자가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제2장 직무청렴 의무

- **제7조(직무청렴 의무와 책임)** ①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8조(금품수수 등의 제한) ①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7.>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6. 이 ·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 기념품 등 선물
- 7. 그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②임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임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이권 개입 등 금지) ①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직무관련 정보의 유출금지 및 거래 등의 제한) ①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를 담당(결재권자를 포함)하는 기간 중에 알게 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 또는 업무가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 1.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 2.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 정보
  - 3. 연구용역 및 각종 시험관련 정보
- 제11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청렴의무 준수기간) 임원은 공단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 제3장 청렴의무 위반심의

- 제13조(위반 심의·의결) 임원이 제8조 내지 제11조에 정해진 직무청렴 의무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의결 절차 및 방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제안은 이사회의 의장이 한다. ②기타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5조(재심 청구) ①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②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제4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16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①임원이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형확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 1. 금고이상
- 가. 임원으로 재직기간 중 공단에서 받은 포상의 취소
- 나.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전액(100%) 미지급 또는 회수
- 다.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
- 2. 벌금형
- 가. 의무 위반년도에 공단에서 받은 포상의 취소
- 나.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50% 감액지급 또는 회수
- ②임원이 직무청렴의무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성과급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유보일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민법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3.5〉
- ③임원이 퇴직 후에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3.5〉
- 제17조(성과급의 회수) ①성과급을 회수하는 때에는 금액, 회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성과급 회수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②해당 임원은 이사회에서 성과급 회수를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청구)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장 보 칙

- 제19조(경영공시) 직무청렴계약제의 운영현황은 경영공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 제20조(관련부서) 이 규정에 따른 직무청렴계약의 체결은 윤리경영 소관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7.12.28>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자가 이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임 또는 퇴직일까지로 한다.

#### 부 칙<2007.12.28>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3.5>

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12.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 부 칙<규정 제000호, 2021.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적용대상이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도 이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신설 2012.3.5.> <개정 2017.12.4.> <개정 2021.10.7.>

#### 이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 제1장 총칙

- 제1조【계약의 목적】이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 및 그 관련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방법】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비상임이사(이하 "선임비상임이사"라 한다)는 각각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 제3조【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된다.
- 제4조 【용어의 정의】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민원처리규정」 제3조제2항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검사, 감독, 진단,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승인, 시험, 지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 · 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2.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직무청렴 의무

- 제5조【직무청렴 의무와 책임】 ① 이사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6조【금품수수 등의 제한】 ① 이사장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 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 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이·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 기념품 등 선물
  - 7.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② 이사장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이사장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이권 개입 등 금지】 ① 이사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장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직무관련 정보의 유출금지 및 거래 등의 제한】 ① 이사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 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

- 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를 공단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알게 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 또는 업무가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 1.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 2.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 정보
- 3. 연구용역 및 각종 시험관련 정보
- 제9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이사장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 등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청렴의무 준수기간】 이사장은 공단에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절차】 이사장의 직무청렴 의무 위반에 관한 심의·의결 절차는 공단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2조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① 이사장은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그형의 확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 1. 금고 이상
  - 가. 이사장으로 재직기간 중 공단에서 받은 포상의 취소
  - 나.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전액(100%) 미지급 또는 회수
  - 다.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
  - 2. 벌금형
  - 가. 의무 위반년도에 공단에서 받은 포상의 취소
  - 나.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의 50% 감액지급 또는 회수
  - ② 이사장이 직무청렴의무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성과급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유보일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이사장이 퇴직 후에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청구】 이사장은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2조제1항

에 따른 제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장 보칙

제1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사장과 선임비상임 이사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참여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 부 칙

제1조【계약의 적용시기】 이 계약은 20××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비상임이사 △△△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직 무청럼 계약을 체결함.

#### 20××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000	선임비상임이사 △△△
(서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신설 2012.3.5> <개정 2017.12.4.> <개정 2021.10.7.>

#### 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 제1장 총칙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 및 그 관련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단 유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방법】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각각 이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 제3조 【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민원처리규정」 제3조제2항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검사, 감독, 진단,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승인, 시험, 지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 · 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직무청렴 의무

- 제5조【직무청렴 의무와 책임】 ①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6조【금품수수 등의 제한】 ① 이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이 ·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 기념품 등 선물
  - 7.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② 이사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이사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이권 개입 등 금지】 ① 이사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직무관련 정보의 유출금지 및 거래 등의 제한】 ①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를 공단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알게 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 서부터 해당 계획 또는 업무가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 1.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 2.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 정보
- 3. 연구용역 및 각종 시험관련 정보
- 제9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이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 등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청렴의무 준수기간】 이사는 공단에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절차】 이사의 직무청렴 의무 위반에 관한 심의·의결 절차는 공단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따른다.
- 제12조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① 이사는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그형의 확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 1. 금고 이상
  - 가. 이사로 재직기간 중 공단에서 받은 포상의 취소
  - 나.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전액(100%) 미지급 또는 회수
  - 다.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
  - 2. 벌금형
  - 가. 의무 위반년도에 공단에서 받은 포상의 취소
  - 나.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의 50% 감액지급 또는 회수
  - ② 이사는 직무청렴의무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성과급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유보일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이사는 퇴직 후에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청구】 이사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장 보칙

제1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사장과 이사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가 참여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 부 칙

제1조【계약의 적용시기】 이 계약은 20××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 △△△은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함.

20××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Δ Δ Δ	이사장 ㅇㅇㅇ
(서명)	(서명)